

10. 宅地合同開發 施行基準 一部 緩和

資料提供：土地開發公社

1. 내 용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자금난 등 어려운 여건을 이유로 택지합동개발 참여시 택지대금의 납부기한 완화조치 등을 건의해 음에 따라 합동개발 시행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그 내용은 택지대금의 제1회 선수금 납부비율에 있어 60㎡(18평) 초과 주택용지 및 85㎡(25.7평) 초과 주택용지가 현행 각각 4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택지합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일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30%를 넘게 수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택지대금 수납기간에 있어서도 중도금에 해당하는 2회 및 3회 선수금의 납부기한이 현행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및 1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9개월 이내 및 18개월 이내로 각각 연장 조정하였다.

△ 또한, 택지합동개발참여를 위한 매입신청시 받고 있는 신청 예약금에 있어서 현행 현금에 의한 납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건설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한 납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서 합동개발참여 결정이 있기 전의 단계에서 매입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을 배제시켰으며 신청 예약금의 규모도 현행 100분의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 100분의 5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리고 종래 합동개발참여를 위한 협약체결기한이 10일로 되어 있어 업체가 주거은행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15일로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해소하였다.

△ 이외에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연체대금에 대한 대폭적인 납기연장 등의 조치도 함께 요망한 바 있으나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계속된 자금압박과 최근의 부동산경기 안정화 추세에 의한 용지매각 부진 등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도 어려운 경영여건에 당면하여 있고 정부의 5·8조치에 의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상업·업무용지의 신규취득금지, 공공기관의 신도시 이전 제한, 각 사업지구에 설정되어 있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정부의 예산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투하 사업비의 회수가 동결되고 있는 등 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조치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완화조치의 배경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주택건설물량에 대한 규제조치에 따라 아파트 분양일정이 일부 조정되는 등 투하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택지대금 완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수렴을 조치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완화조치는 곤란한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3. 기대 효과

택지합동개발 참여에 있어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회 선수금 비율을 최고 30% 이상 넘지 못하게 하고 증도금(2회 및 3회 선수금)의 납부기간을 적정기간 안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 예약금을 현금인 아닌 지급보증서에 의해서도 납부 가능토록 함으로서 업계의 자금난을 일부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예약금의 경우 예컨대 100억원 상당의 아파트용지 매입시 5억원 이상의 신청예약금 납부를 하여야 했던 것을 약 4만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첨부 : 시행기준 완화 내용 1부.

시행기준 완화 내용

㉠ 시행일 : '92. 3

① 선수협약체결일로부터 토지사용 가능시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수납비율 및 수납기간을 일부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

(밑줄친 부분이 개선 시행하는 내용임.)

(단위 : 공급가격대비)

구분 용도	1회 선수금 (계약체결시)	2회 선수금 (체결일로부터 9월 이내)	3회 선수금 (체결일로부터 18월 이내)	잔 대 금 (토지사용 가 능시)
임대주택 건설용지	10% 이내	15% 이내	15% 이내	잔대금
60㎡이하 주택용지	30% 이내	20% 이내	20% 이내	잔대금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u>30% 이내</u>	20% 이내	20% 이내	잔대금
85㎡초과 주택용지	<u>30% 이내</u>	20% 이내	20% 이내	잔대금

현행 위 수납표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용지는 30% 이상, 그외 주택용지는 50% 이상 12개월 이내에 각각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임대주택용지는 20% 이상 그외 주택용지는 50% 이상 각각 수납하는 것으로 완화 운용함.

② 신청예약금의 납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함.

△ 현행 현금에 의한 수납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투자기간 회계규정 제190조제 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에 의하여서도 납부 가능토록 함.

△ 100분의5 이상 수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5 해당 금액만을 수납하도록 함.